



보도시점 2024. 2. 28.(수) 16:00 배포 2024. 2. 28.(수) 10:00

‘보전산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 정부,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개선안 마련
- 6개 부처 연관 산지 복합규제 개선, 국민 편의 및 지역산업 활성화 등 기여

- ▶ 자체 A는 소규모 보전산지의 해제가 필요할 경우 광역지자체를 거쳐 산림청으로 지정해제를 신청해야만 했다. 보전산지 해제 시 수개월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3만 제곱미터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리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경우, “주민 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시설(교육·청년·노유자 등을 위한 시설) 등의 조속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 산림법인 A는 임업 현장이 산세도 협준하고 고령 임업종사자들이 풀베기 등 작업하기 어려우며, 작업강도도 높고 안전사고 위험이 크며 이를 대신할 청년세대 유입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 청년층 외국인력을 통해 산림작업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어 인력 대체 효과가 큰 국내 목재산업 및 임산물 생산 등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 (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의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 (분야) △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임업 경쟁력 제고 △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 아울러, ②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③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하여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 ④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상 임업인 자격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했다. (23.10.16. 기 시행)
 - 또한, ⑤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⑥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m²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 아울러, ⑦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 이번 개선안은 추진단이 지난해 2월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한 이래 1년여에 걸쳐 산림청·행안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3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임업인과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총 9건) / [참고 2]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https://foryou.better.go.kr)	책임자	과장 오영곤 (02-3778-3440)
		담당자	전문위원 강성공 (02-3778-3586)
		담당자	전문위원 오장석 (02-3778-3587)
담당 부서 <총괄>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	책임자	담당관 주요원 (042-481-4001)
		담당자	사무관 이원기 (042-481-4281)
담당 부서 <보전산지>	산림청 산지정책과	책임자	과장 도재영 (042-481-4140)
		담당자	사무관 이동진 (042-481-4145)
담당 부서 <국립공원>	환경부 자연공원과	책임자	과장 이창규 (044-201-7316)
		담당자	사무관 곽태영 (044-201-7311)
담당 부서 <임산물 판매시설>	국토부 산림청 녹색도시과 사유림경영소득과	책임자	과장 장구중 (044-201-3742) 과장 김용진 (042-481-4190)
		담당자	사무관 전성이 (044-201-3745) 사무관 이원미 (042-481-4155)
담당 부서 <수목원 별도합산과세>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책임자	과장 제은혜 (042-481-1210)
		담당자	사무관 이상필 (042-481-1831)
담당 부서 <신용보증서>	금융위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장 남동우 (02-2110-2873)
		담당자	사무관 김진경 (02-2110-2863)
담당 부서 <임업직불금>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책임자	팀장 강창모 (042-481-1240)
		담당자	사무관 이민규 (042-481-1241)
담당 부서 <산림교육기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책임자	과장 안병기 (042-481-4210)
		담당자	사무관 김일숙 (042-481-8869)
담당 부서 <외국인고용>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책임자	과장 최현수 (042-481-1850)
		담당자	사무관 안진호 (042-481-1851)

참고 1

세부 개선과제 (총 9건)

✓ 공익용산지* 지정 요건 합리화 (산림청) * 공익기능(수원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산지

현행

- ▶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 산지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

개선

- ▶ **법령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개정 추진

효과

- ▶ **과도한 재량권 규제 폐지 및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강화**

✓ 보전산지* 지정 · 해제 권한 지자체 일부 위임 (산림청) *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는 산림총장이 지정

현행

- ▶ 산지 면적 6,298천ha 중 보전산지는 4,897천ha(77.7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보전산지를 해제

개선

- ▶ **3만m² 미만** 보전산지 지정 · 해제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
⇒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추진

효과

- ▶ 지역별 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효율적 산지 이용 활성화

✓ 국립공원 사전 탐방로 예약제 개선 (환경부)

현행

- ▶ 북한산 우이령길(4.46km)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주중 · 주말 등에 예약제('09부터)를 시행(하루 1,190명만 허용), 이용시간 제한으로 이용객 불편 초래

개선

- ▶ 우이령길 탐방로 예약제 탄력적 시범* 운영
 - * 주중(평일) 예약 없이 이용, 주말과 가을철(9~11월)은 상시 예약제 유지
⇒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운영(변경) 공고(2024. 2. 17.)

효과

- ▶ 사람(주민 편의)과 환경(자연보호)의 공존을 통한 상생형 모델 제시

임업직불제 자격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산림청)

현행

- ▶ 2022년도 대상자는 2만여 명(전체 산주 215만명), 예산은 512억원에 불과 (농업직불금 예산의 2%)하며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수혜 확대 필요

개선

- ▶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 완화
-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효과

- ▶ 임업직불제 개선으로 임업인 수혜자 확대 및 고령의 임업인 편의 제고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산림청)

현행

- ▶ 농·축·어업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임업은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가 시행 초기부터 제외되었음

개선

-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동포취업)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도입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1,000명 신규 허용 결정(23.11.27.)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

효과

- ▶ 임업분야 고용성 향상으로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 (산림청)

현행

- ▶ 공익목적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국·공립 기관 외는 설립이 어려움
- ※ 유아숲체험원 총 464곳중 국립 85곳, 공립 362곳이고 사립은 17곳

개선

- ▶ 유아숲체험원은 규모(1만m²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60% 이하 범위로 완화(지자체 조례)하여 정할 수 있도록 추진 (23. 11. 16. 시행)
- ※ (규모) 1만 m² 이상 → 6천 m² 이상
(유아숲지도사) 유아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현 3명 → 1.8명(2명)

-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일부개정

효과

- ▶ 지역·생활권 중심 유아숲체험원의 설립 확대로 유아 및 지역주민 접근성 제고

수목원 내 임야의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산림청)

현행

- ▶ 산림공익시설인 수목원은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 적용

개선

- ▶ 수목원 내 임야(전체 62%)는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별도합산·분리과세 적용 요건을 갖추어 세부담 완화 추진
 - ※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상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준보전·보전산지 내 임야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
 - ⇒ 산림청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임야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명확화
- ▶ 수목원의 고액의 세금부담을 개선하여 수목원 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고 수목유전자원의 수집·보전·전시 등 목적활동 수행여건 개선

효과

그린벨트(GB) 내 임산물전시판매시설 설치 확대 (국토부, 산림청)

현행

- ▶ 그린벨트(GB) 내 임산물전시판매시설 면적($1,000\text{m}^2$) 제한
 - ※ 농협의 공판장 및 화훼전시판매시설은 $3,300\text{m}^2$ 까지 허용(개발제한구역 설치 기준)

개선

- ▶ 농협 공판장·화훼전시판매시설과 동일하게 $3,300\text{m}^2$ 까지 확대 추진
 - ⇒ 임산물전시판매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산림청) 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개정 검토 추진(국토부)

효과

- ▶ 임산물 유통판매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임산물 구매 편의성 증대

농신보* 신용보증서 발급지원 개선(금융위원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현행

- ▶ 산림휴양시설 사업자(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등)로 지정시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함에도 일부 금융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급 불가 처리 사례 발생
 - * '22년 금융위 검토결과 산림청에 회신(산림휴양시설 사업자는 보증지원 가능)

개선

- ▶ 금융위(농신보)는 업무방법서(매년 발간)와 해설서(연초) 및 각종 교육·홍보 자료에 이를 반영하여 보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 「신용보증업무방법(보증대상자)」 등 개정

효과

- ▶ 임업인의 원활한 사업자금 활용으로 산림휴양시설 활성화 및 수익 창출 기대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추진단, 3개 분야 9개 산지 이용 개선안 마련

 규제
세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보전간지 해제 권한

시·도지사가 위임으로 지역의 활용도를 넓힌다.



산지 이용 규제 허리화



공익용 산지 지정 요건 개선으로 **산지관리 합리성 제고**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권한 **시·도 지사에게 위임**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 **탐방예약제 개선**으로 평일 이용 확대
그린벨트(GB) 내 **임산물 전시 판매 시설 설치 확대**

세제·금융 협평성 제고



수목원 내 임야 재산세 별도 **합산·분리과세** 적용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서 발급제도 개선으로 **자금 지원 확대**
임업 직불금제 자격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로 **수혜 확대**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유아숲 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로 **산림교육 활성화** 도모
임업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으로 인력부족 해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p>보전산지 해제권한 위임을 통해 지역별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산지 이용 가능</p>	 <p>임업분야 외국 인력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인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 기대</p>
 <p>우이령길 탐방로 평일 예약 없이 이용 가능 (승수기 제외)으로 사람(주민 편의)과 환경(자연보호)의 공존을 통한 상생형 모델 제시</p>	 <p>그린벨트(GB) 내 임산물 전시 판매시설 설치 확대 개선으로 임산물 유통판매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임산물 구매 편의성 증대</p>
 <p>산지 및 임업인에 대한 세제·금융 협평성 제고를 통해 임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여</p>	 <p>산림자원 생산·관리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로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 및 산촌경제 활성화 기대</p>